


#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F A Q

2022. 6

 한국에너지공단  
RPS 사업실

# - 목 차 -

## I.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 Q1 RPS제도란 무엇인가요?
- Q2 RPS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어떻게 되나요?
- Q3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공급인증서(REC)의 가격은 얼마이며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 Q4 계통한계가격(SMP)은 얼마이며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 Q5 공급인증서(REC)는 어떻게 판매하나요?
- Q6 발전소의 예상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II.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 Q7 입찰 참여시(서류 접수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한가요?
- Q8 입찰에는 어떤 에너지원이 참여 가능한가요?
- Q9 입찰참여시 입찰 가격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Q10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태양광 및 ESS의 계약은 합쳐서 하나로 하나요?
- Q11 선정된 경우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Q12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에 선정되었습니다.  
공급의무자와 계약 진행시 (SMP+1REC가격) 계약과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Q13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선정되면 계약기간 동안 계약기간, 계약 단가 등이 변경 가능한가요?
- Q14 준공된 발전소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현물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가요?
- Q15 계약 체결 후 계약 취소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또한, 계약 취소된 발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Q16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등록이 가능한가요?
- Q17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 시 기존설비시장 및 신규설비시장의 참여 자격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 Q18 2종류 이상의 태양전지 모듈 또는 인버터를 혼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접수 등록하나요?
- Q19 입찰 참여서 제출이 완료한 경우 내역 수정이 가능한가요?
- Q20 발전사업허가만 받은 발전소가 입찰에 선정되면 언제까지 준공해야 하나요?
- Q21 태양광과 태양광연계 ESS가 고정가격계약에 선정되었습니다. 태양광은 설치완료했는데 ESS 미설치시 어떻게 되나요?

### Ⅲ.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첨부 서류

- Q22 입찰 참여서 제출 시 첨부서류들은 언제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되나요?
- Q23 건축물 이외의 기존 시설물임을 증빙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Q24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 Q25 사업내역서 평가시 자금조달 현황(계획)에 따른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우대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나요?
- Q26 사업내역서 평가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라 우대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나요?
- Q27 사업내역서 평가시 농·축산·어업인 태양광의 경우 우대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Q28 사업내역서 평가시 협동조합의 경우 우대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Q29 사업내역서 평가시 주민참여형 발전소의 경우 우대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Q30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 대상 설비는 어떻게 되나요?
- Q31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 대상 설비인데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이 없는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 Q32 태양광연계 ESS 설치시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Q33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되었는데, 입찰 참여서 및 사업내역서의 모듈 또는 인버터, 접속함을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여 설치할 경우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I.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Q1) RPS제도란 무엇인가요?

⇒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의 약자로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 50만kW이상)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공급의무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때,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일반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발전한 증빙자료(공급인증서(REC))의 구매를 통해 의무량을 달성하여야 합니다.

Q2) RPS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어떻게 되나요?

⇒ 일반적으로 RPS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와 전력판매계약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는 것이며, 또 하나는 신재생 발전량에 대해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 공급의무자와의 거래를 통해 수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전력판매수익과 공급인증서판매 수익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발전소 수익=전력판매 수익+공급인증서판매 수익

Q3)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공급인증서(REC)의 가격은 얼마이며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로 1,000kWh당 1REC에 해당합니다.

공급인증서(REC)의 가격은 판매시 사업자 등이 결정하게 되며, 거래 완료된 공급인증서의 평균 가격 등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신재생원스톱 사업 정보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계통한계가격(SMP)은 얼마이며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 계통한계가격은 전력통계정보시스템(<http://epsis.kpx.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공급인증서(REC)는 어떻게 판매하나요?

⇒ 공급의무자와 태양광발전사업자간의 공급인증서 거래 방식은 매주 열리는 현물거래시장과 공급의무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자체계약,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등이 있습니다.

Q6) 발전소의 예상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예상 수익 계산식>

○ 발전소수익 = ①전력판매 + ②공급인증서판매

① 연간전력 판매수익(예상) = 설비용량(kW) × 일평균발전시간(3.4~3.6시간, 예상) × 연일수(365일) × 예상 계통한계가격(원/kWh)

② 연간공급인증서 판매수익(예상) = 설비용량(kW) × 일평균발전시간(3.4~3.6시간, 예상) × 연일수(365일) ÷ 1000 × 가중치 × 예상 REC판매가격(원/REC)

※ 상기 산식은 예상수익을 구하는 계산식이므로, 실제 정보(일평균발전시간, 예상 가격 등)에 따라 수익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II.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Q7) 입찰 참여시(서류 접수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한가요?

⇒ 접수시스템에 입찰 참여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Q8) 입찰에는 어떤 에너지원이 참여 가능한가요?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는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가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단, 태양광설비에 대해 기 계약이 체결된 사업자의 ESS설비에 한하여 단독 입찰이 가능합니다.

Q9) 입찰참여시 입찰 가격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입찰 가격은 계통한계가격(SMP)과 공급인증서(REC)가격을 합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입찰가격(원) = SMP(원) + 1REC(원)

\* SMP는 1MWh 기준

Q10)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태양광 및 ESS의 계약은 합쳐서 하나로 하나요?

⇒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는 선정 사업자가 각각에 대한 계약방식을 결정하여 각각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계약방식(태양광 및 태양광연계ESS 각각 택일)

\* (SMP + 1REC가격)

\* (SMP + 1REC가격 × 가중치)

Q11) 선정된 경우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계약기간은 태양광의 경우 20년 이며, ESS는 15년입니다.

계약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20년(태양광)이며, 계약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태양광)입니다.

Q12)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에 선정되었습니다.

공급의무자와 계약 진행시 (SMP+1REC가격) 계약과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계약방식의 차이는 계약시 작성하는 고정가격과 실제 매달 정산하는 공급인증서(REC) 지급단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SMP+1REC가격) 계약방식

- 고정가격 = 입찰가격(SMP+1REC)
- 공급인증서(REC) 지급단가 = 고정가격 - 월단위 전력거래가격(SMP)

○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

- 고정가격 = 기준 SMP + (입찰가격 - 기준 SMP) × 가중치
- 공급인증서(REC) 지급단가 = (고정가격 - 월단위 전력거래가격(SMP)) ÷ 가중치

⇒ (Case 1) 설비 가중치 1.2인 월 10MWh 생산하는 태양광설비가 입찰가격 150,000원으로 선정, 월단위 전력거래가격(SMP)이 계약후 첫달 100,000원 둘째달 110,000원일 경우(단, 기준 SMP는 80,000원 일 경우)

⇒ (Case 1 : (SMP+1REC가격) 계약시)

- (계약시) 고정가격 : 150,000원

- 첫달 정산

- SMP : 10MWh × 100,000원/MWh = 1,000,000원
- REC : (150,000원 - 100,000원) × 12REC = 600,000원
- 첫달 정산금 = 1,000,000원 + 600,000원 = 1,600,000원

- 둘째달 정산

- SMP : 10MWh × 110,000원/MWh = 1,100,000원
- REC : (150,000원 - 110,000원) × 12REC = 480,000원
- 둘째달 정산금 = 1,100,000원 + 480,000원 = 1,580,000원



⇒ (Case 1 : (SMP+1REC가격×가중치)계약)

- (계약시) 고정가격 : 164,000원

• 고정가격 = 80,000원 + (150,000원 - 80,000원) × 1.2

- (첫달 정산)

• SMP : 10MWh × 100,000원/MWh = 1,000,000원

• REC : [(164,000원 - 100,000원) ÷ 1.2] × 12REC = 640,000원

• 첫달 정산금 = 1,000,000원 + 640,000원 = **1,640,000원**

- (둘째달 정산)

• SMP : 10MWh × 110,000원/MWh = 1,100,000원

• REC : [(164,000원 - 110,000원) ÷ 1.2] × 12REC = 540,000원

• 둘째달 정산금 = 1,100,000원 + 540,000원 = **1,640,000원**

⇒ (Case 2) 설비 가중치 0.5인 월 10MWh 생산하는 태양광설비가 입찰가격 150,000원으로 선정, 월단위 전력거래가격(SMP)이 계약후 첫달 100,000원 둘째달 110,000원일 경우(단, 기준 SMP는 80,000원 일 경우)

⇒ (Case 2 : (SMP+1REC가격) 계약시)

- (계약시) 고정가격 : 150,000원

- 첫달 정산

• SMP : 10MWh × 100,000원/MWh = 1,000,000원

• REC : (150,000원 - 100,000원) × 5REC = 250,000원

• 첫달 정산금 = 1,000,000원 + 250,000원 = **1,250,000원**

- 둘째달 정산

• SMP : 10MWh × 110,000원/MWh = 1,100,000원

• REC : (150,000원 - 110,000원) × 5REC = 200,000원

• 둘째달 정산금 = 1,200,000원 + 150,000원 = **1,300,000원**

⇒ (Case 2 : (SMP+1REC가격×가중치)계약)

- (계약시) 고정가격 : 115,000원

• 고정가격 = 80,000원 + (150,000원 - 80,000원) × 0.5

- (첫달 정산)

• SMP : 10MWh × 100,000원/MWh = 1,000,000원

- REC :  $[(115,000\text{원} - 100,000\text{원}) \div 0.5] \times 5\text{REC} = 150,000\text{원}$
- 첫달 정산금 = 1,000,000원 + 150,000원 = **1,150,000원**

- (둘째달 정산)

- SMP :  $10\text{MWh} \times 110,000\text{원/MWh} = 1,100,000\text{원}$
- REC :  $[(115,000\text{원} - 110,000\text{원}) \div 0.5] \times 5\text{REC} = 50,000\text{원}$
- 둘째달 정산금 = 1,100,000원 + 50,000원 = **1,150,000원**

※ 상기 산식은 계약 및 정산 관련 예시이며, 실제 계약정보(SMP, 고정가격 등)에 따라 수익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Q13)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선정되면 계약기간 동안 계약기간, 계약단가 등이 변경 가능한가요?

⇒ RPS운영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한번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고시가 변경되더라도 계약내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설비확인, 설비변경 및 사후관리 등으로 고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가중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가중치를 적용한 고정가격으로 변경계약 하여야 합니다.

Q14) 준공된 발전소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현물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가요?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RPS 대상설비 확인 후 공급인증서 발급은 가능하며, 현물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Q15) 계약 체결 후 계약 취소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또한, 계약 취소된 발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되어 매매계약체결 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향후 3년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자를 승계한 경우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참여제한은 발전사업허가번호, 발전사업대표자, 발전소명, 발전소 부지 등 발전사업 허가에 대해 적용됩니다.

Q16)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등록이 가능한가요?

⇒ 하나의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여러 개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발전소 별로 각각 1건의 참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17)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 시 기존설비시장 및 신규설비시장의 참여자격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 최초 발급시점('20.9.16.)을 기준으로 발급전인 '20.9.15일까지 모듈계약을 체결한 발전소는 기존설비시장 참여, '20.9.16일 이후 모듈계약을 체결한 발전소는 신규설비시장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Q18) 2종류 이상의 태양전지 모듈 또는 인버터를 혼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접수 등록하나요?

⇒ 입찰 참여서 작성시 각각의 태양전지 모듈 또는 인버터를 검색하여 선택하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인버터의 모델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Q19) 입찰 참여서 제출이 완료한 경우 내역 수정이 가능한가요?

⇒ 제출이 완료된 입찰 참여서는 일체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Q20) 발전사업허가만 받은 발전소가 입찰에 선정되면 언제까지 준공해야 하나요?

⇒ 공급의무자와의 계약일로부터 설비용량 1MW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7개월 이내, 설비용량 1MW~20MW미만의 경우 12개월 이내, 설비용량 20MW이상의 경우는 24개월 이내 준공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Q21) 태양광과 태양광연계 ESS가 고정가격계약에 선정되었습니다. 태양광은 설치완료했는데 ESS 미설치시 어떻게 되나요?

⇒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에 대해 입찰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자는 공고문에 제시한 기준에 맞춰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태양광 및 ESS 중 하나의 설비라도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공급의무자는 전체 계약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에 대해 무효화가 가능합니다.

### Ⅲ.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첨부 서류

Q22) 입찰 참여서 제출 시 첨부서류들은 언제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되나요?

⇒ 첨부 서류들은 갱신된 내용이 반영된 최신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특히 보험증빙서류는 보험기간이 공고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불인정하므로, 보험을 갱신하여 보험기간이 공고일 이후인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Q23) 건축물 이외의 기존 시설물임을 증빙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① 태양광 설비 (2) 기존시설물에 해당하는지 관련법률을 검토하는 해당관청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24)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 (임시)사용승인서는 불인정됩니다.

Q25) 사업내역서 평가시 자금조달 현황(계획)에 따른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우대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나요?

⇒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평가시 우대됩니다. 단, 입찰공고문 [별첨3]에 따른 태양광발전소 자금조달현황(계획서) 및 해당 서류에 작성한 견적서, 자기자본 (대출현황, 예금잔액)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

Q26) 사업내역서 평가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라 우대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나요?

⇒ 종합보험(공제) 또는 기타 재물손해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평가시 우대됩니다. 단, 해당 발전소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서, 청약서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 보험/공제 : 태양광 발전설비 직접손해와 자연재해 또는 운영중 발생하는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공제

Q27) 사업내역서 평가시 농·축산·어업인 태양광의 경우 우대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농·축산·어업인이 단독 또는 조합을 이루거나 지분을 참여하여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내역서 평가시 우대됩니다. 단, 농·축산·어업인 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4 서식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첨부.
- \* (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하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 (축산업인)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부터 제24호, 제29호의3 서식에 따라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축산업 허가(등록)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Q28) 사업내역서 평가시 협동조합의 경우 우대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발전소의 경우 사업내역서 평가시 우대됩니다. 단,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합으로 협동조합 설립 관련 서류 및 협동조합 정관의 사업내용 중 에너지사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 → 기획재정부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발급
-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 → 기획재정부에서 발급

Q29) 사업내역서 평가시 주민참여형 발전소의 경우 우대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주민참여형 발전소의 경우 사업내역서 평가시 우대됩니다. 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1 주민참여형 설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주민참여 지분비율 및 총사업비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제출서류	증빙내용
참여주민	참여주민 초본	발전설비의 경계면에서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가 5인 이상 참여
주민참여비율	견적서(총사업비), 대출증빙(자기자본), 참여주민 입출금 내역	자기자본 비율(주민참여금액/자기자본) 10% 이상 총사업비 비율(주민참여금액/총사업비) 2% 이상

Q30)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 대상 설비는 어떻게 되나요?

⇒ 해당 발전소의 토지 지목에 따라 설비확인 신청 시점으로 제출 의무 대상 설비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토지 지목이 임야(산지)인 경우는 '19.6.30일 까지 RPS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가 해당되며, 임야 외인 경우는 '20.6.30일 까지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가 해당됩니다.

Q31)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 대상 설비인데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이 없는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발전소가 경미한 행위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는 관할 지자체의 확인 서류(공문, 국민신문고 답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첨] 자료 참조

Q32) 태양광연계 ESS 설치시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에너지저장장치(ESS)설치시 축전지(Battery)는 한국전지산업협회에서 취득한 인증서를 제출하고, 전력변환장치(PCS)는 스마트그리드협회 표준 'SPS-SGSF-025-4 전기저장 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시험 요구사항' 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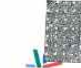

Q33)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되었는데, 입찰 참여서 및 사업내역서의 모듈 또는 인버터, 접속함을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여 설치할 경우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RPS 대상설비확인 이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시스템([https://rps.energy.or.kr/login\\_fst.do](https://rps.energy.or.kr/login_fst.do))에서 사전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설비만 사전승인 대상입니다.

태양전지 모듈 효율이 같거나 그보다 높고 탄소배출량이 같은 수준이거나 그보다 적은 모델(입찰점수 평가 구간이 동일 또는 높은 배점구간 모델)로의 변경, 인버터 및 접속함은 제조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일 경우

\* 경쟁입찰 사전승인 신청절차는 공급의무화제도(RPS) 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 별첨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대체 서류 예시

지자체 공문	국민신문고 답변
<p style="text-align: center;">서함과 자인이 함께하는 희망진안</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b>진 안 군</b></p> <p>대한민국 대표발 진안형뉴딜</p> </div>  </div> <p>수신 [ ] (경유)</p> <p>제목 건축물 상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알림 [ ]</p> <p>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신자부 고시 제2020-105호) 관련입니다.</p> <p>2.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확인을 받으려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관련기관 으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정된 바,</p> <p>3. 붙임과 같이 전기(태양광)발전사업 허가된 건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을 알립니다.</p> <p>붙임 1.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전라북도 허가사항 알림 공문 1부.</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진 안 군 </p>	<p style="text-align: right;">국민신문고 <span style="float: right;">Page 2 of 2</span></p> <p>통지일 [ ] 처리결과 (답변내용) [ ]</p> <p>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한 해당 발전소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대상 유무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발전사업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대상</p> <p>사업 장소 무계/수평투영면적/부피 토지이용계획 [ ]</p> <p>계획관리지역</p> <p>회신 내용</p> <p>개발행위 대상 여부 검토 내용 관련 규정 비대상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ton 이하, 부피가 1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호</p> <p>■ 부여군 군계획 조례 제25조의2 제7호</p> <p>끝.</p>